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 신규 설치에 따른 파주시 노인복지시설의 현황을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노인복지관 운영과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을 신설함(안 별표 1)
- “파주시 노인복지관 시설 사용료”를 “노인복지시설 시설 사용료”로 개정하고 금액 단위 표기를 통일하는 등 표기 방식을 전반적으로 정비(안 별표 2)
-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이 필요한 용어를 정비(안 별지 서식)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상업등기법」 제15조
- 「상업등기규칙」 제26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 별첨

□ 사전예고 결과 : 예정

- 입법예고기간 : 2026. 10. 2. ~ 10. 22.(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26. 11.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현행 조례
-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파주시”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면제 할”을 “면제할”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파주시의”를 “시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파주시에”를 “시에”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지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노인장애인과 ☎ 940-4401
입 안 자	노인장애인과장	우 은 정
	노인시설팀장	이 종 호
	담 당 자	조 미 영

[별표 1]

노인복지시설 종류별 명칭 및 소재지

종류	구분	명칭	소재지	비고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파주시 노인복지관	파주시 가나말로 130	
		운정다누림 노인복지관	파주시 목동동 1086	
		문산해누림 노인복지관	파주시 문산읍 개포래로 34	
재가노인복지시설		파주시 은빛사랑채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832	

[별표 2]

노인복지시설 시설 사용료

□ 노인복지관 시설 사용료

1. 시설사용료

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 고
대 강 당	오전 (08시~12시)	50,000원	○ 토, 일, 공휴일, 야간은 기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시는 기준액의 50퍼센트로 한다. ○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 (철야 포함) 작업시는 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오후 (13시~18시)	60,000원	
	야간 (18시~22시)	70,000원	
	1 일	100,000원	
소 강 당	오전 (08시~12시)	40,000원	
	오후 (13시~18시)	50,000원	
	야간 (18시~22시)	60,000원	
	1 일	90,000원	

2. 부속설비 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음향기기	1회 (2시간)	20,000원	○ 매시간 초과시마다 해당 기준요액의 20퍼센트 초과율만 추가 징수

3. 냉·난방 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대 강 당	1회 (2시간)	50,000원	○ 매시간 초과시마다 해당 기준요액의 20퍼센트 초과율만 추가 징수
소 강 당	1회 (2시간)	35,000원	

[별지 서식]

위탁운영신청서

법 인 현 황	법 인 명			대 표 자(성별)	
	소 재 지				
	설립일자			연 락 처	
	재산내역	고정자산		유동자산	

주요사업 등 법인홍보내용

위와 같이 파주시 ○ ○ ○ ○ ○ ○을 위탁 운영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2. 법인정관 및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3. 법인임원 및 자산현황 증빙서류 각 1부
4. 법인 전년도 결산서(신설법인제외) 1부
5. 사업계획서(운영계획, 종사자 확보계획) 1부
6.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중 법인부담금 납입확약서(이사회결의서 사본 첨부) 1부

신청자(법인대표) 인

파 주 시 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이용대상) ① 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u>과주시</u> 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 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대상) ① ----- ----- <u>과주시(이하 “시”라 한다)</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 ① (생략)	제11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의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최소한의 실비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u>면제</u> 할 수 있다.	②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 ----- -----.
1. 수탁자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으로 <u>과주시의</u>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1. ----- ----- <u>시의</u>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5.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개	5. -----

축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u>과주시에</u> 기부채납한 것으로 한다. 6. (생 략)	----- ----- ----- <u>시에</u> ----- ---. 6. (현행과 같음)
--	--

□ 관련법령발췌서

상업등기법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 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9.>

② ~ ③ (생략)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관련조례 제9조(운영비의 보조)에 따른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사업비 등 지급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6.10.~2031.9. 까지 5년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비교
총 소요액	811,593	1,660,595	1,663,829	1,678,060	1,713,318	1,749,634	
인건비	165,020	1,107,805	1,141,039	1,175,270	1,210,528	1,246,844	매년 3% 증가로 추계함
운영비	34,432	261,530	261,530	261,530	261,530	261,530	
사업비	5,000	241,260	241,260	241,260	241,260	241,260	
재산 조성비	607,141	50,000	20,000	0	0	0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 예산으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장 우은정 노인시설팀장 이종호 담당자 조미영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파주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별 명칭 및 소재지) 파주시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별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업무)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지도
 2. 취업 상담 및 알선
 3. 기능회복훈련의 실시
 4. 교양강좌 등의 실시
 5.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 6. 1., 개정 2025. 3. 20.>

1.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서비스
2.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 관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의 위탁) ①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추진능력을 갖

춘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오로지 봉사정신으로 운영해야 하고 연간예산액 중 보조금의 부족경비에 대하여 자체부담 능력이 있어야 하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인력·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기준
2.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기준

③ 수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은 「과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6. 8. 11., 2011. 12. 23., 2015. 7. 28.>

제6조(위탁계약)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해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운영) 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체규정 등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정 및 개·폐 시는 시장의 사전협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운영비의 보조)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여 보조금 및 후원금 등을 명확·공정·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07. 6. 1., 개정 2011.12.23., 2025. 3. 20.>

제10조(이용대상) ① 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 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시설의 대강당, 소강당 등은 시설의 복지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인에게 대관을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①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그 밖의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최소한의 실비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 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의 지침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으로 파주시의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부가적 수익금과 후원금품 등의 재산을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사용해야 한다.
3.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개축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파주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목적·기준 및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시와의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에 문제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4조(지도 감독) ① 수탁자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의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관계법령,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개정 2025. 3. 20.>

노인복지시설 종류별 명칭 및 소재지

종류	구분	명칭	소재지	비고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파주시 노인복지관	파주시 가나말로 130	
		운정다누림 노인복지관	파주시 목동동 1086	
재가노인복지시설		파주시 은빛사랑채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832	

[별표 2] <개정 2025. 3. 20.>

파주시 노인복지관 시설 사용료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 고
대 강 당	오전	50,000 08시-12시	○ 토, 일, 공휴일, 야간은 기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시는 기준액의 50퍼센트로 한다. ○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 (철야 포함) 작업시는 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오후	60,000 13시-18시	
	야간	70,000 18시-22시	
	1 일	100,000	
소 강 당	오전	40,000 08시-12시	
	오후	50,000 13시-18시	
	야간	60,000 18시-22시	
	1 일	90,000	

2. 부속설비 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음향기기	1회 (2시간)	20,000원	○ 매시간 초과시마다 해당 기준요액의 20퍼센트 초과율만 추가 징수

3. 냉·난방 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대 강 당	1회 (2시간)	50,000원	○ 매시간 초과시마다 해당 기준요액의 20퍼센트 초과율만 추가 징수
소 강 당	1회 (2시간)	35,000원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파 주 시



수신 노인장애인파장

(경유)

제목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 노인장애인파-52604호(2026. 9. 11.)와 관련됩니다.
2. 「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9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부패영향평가 결과

관리번호	주관부서	자치법규명	평가결과
2026-39	노인장애인파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 붙임 1. 결과통보서 1부,
2.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감 사

주무관 류원선 감사관장 이선 감사관 2026. 9. 14. 유대승

협조자

시행 감사관-11092 (2026. 9. 14.) 접수 노인장애인파-53024 (2026. 9. 15.)

우 10930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1, 별관 2층, 감사관실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5843 팩스번호 031-940-4089 / sunsun94@korea.kr / *1공개(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26-39		
자치법규명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류은선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조미영
평가결과 통 지 일	2026. 9. 1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련조문	전 투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파 주 시



수신 노인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회신[「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1. 노인장애인과-52603(2026. 9. 11.)호와 관련합니다.
2.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 규제영향분석 심사결과

소관부서	자치법규명	심사의견
노인장애인과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제 해당사항 없음

붙임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서 1부. 끝.

예 산 법 무 과 장 명

주무관		규제개혁통계	2026. 9. 16.	
권설원	팀장	김선정	예산법무과장	이재현
협조자				
시행	예산법무과-17159	(2026. 9. 16.)	접수	노인장애인과-53557 (2026. 9. 17.)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059	/ ksw8732@korea.kr / 비공개(5)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u>자치법규명</u>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 <u>소관부서</u>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담당	팀장 이종호	담당자 조미영
3. <u>관련법령 등</u>	○ 「상업등기법」 제15조 ○ 「상업등기규칙」 제28조		
4. <u>주요골자</u>	○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문산해누리노인복지관”을 신설함(안 별표 1) ○ “파주시 노인복지관 시설 사용료”를 “노인복지시설 시설 사용료”로 명칭 변경 및 금액 단위 표기 통일 등 표기 방식 정비(안 별표 2) ○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이 필요한 용어를 정비(안 별지 서식)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u>심사의견</u>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문산해누리노인복지관 신규 설치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현황 명확화로 안정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u>심사담당자</u>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경기파주037			
정 책 명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담당자명	조미영	전화번호	031-940-441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9월 1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노인장애인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별지 서식은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④ 성별 통계(점검포인트 : 제·개정 법령과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와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 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별지 서식> 대표자 정보	<별지 서식> 대표자 정보 : 성별 수집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를 수집하지 않으면서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정책대상자인 시민 의 성별 관련 현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성별을 수집하도 록 개선이 권고되고 있음. 따라 서 별지 서식에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칸을 마련하기 바람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2026년 9월 23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9월 17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노인장애인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6A경기파주037			
정 책 명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담당자명	조미영	전화번호	031-940-4417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별지 서식> 대표자 정보 중 성별 수집 권고	☒ 수용 ☐ 일부수용 ☐ 불수용	대표자의 성별 수집 함	
2026년 09월 21일 노인장애인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